

배려와 존중은

일상 속 행복의 시작입니다.

수급자-직원간 상호존중(존칭사용)



“어르신과 종사자의 행복한 동행을 만들겠습니다”

無 폭언

폭언은 마음의 흉기



無 폭행

종사자도 누구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無 성희롱

언어적, 시각적, 육체적 성희롱 금지



장기요양기관 이용자·보호자를 위한 안/내/문



좋은 돌봄 첫걸음은 장기요양요원 존중에서부터
좋은 돌봄을 위해 요양보호사를 존중해 주세요.

어르신에게 좋은 돌봄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도 필요합니다.

01 불러요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에 대한 존중은 올바른 호칭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요양보호사'라고 불러주세요.

02 믿어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나의 가족을 위해 무심코 하는 요구들에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돌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믿고 알려 주세요.

《적절하지 않은 요구 예시》

시설요양 - 과도한 프로그램 요청, 무분별한 실시간 보고 요구 등
방문요양 - 수급자 가족을 위한 청소, 반려동물 관리, 대용량 김장 등

03 지켜요 안전한 돌봄환경

일하는 사람이 안전해야 좋은 돌봄이 가능합니다.
요양보호사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언, 폭행, 성희롱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폭언, 폭행, 성희롱이 지속된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첫째, 기관에서 이용자와 보호자 대상 면담을 진행합니다.
- 둘째,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해 요양보호사와 분리조치할 수 있습니다.
- 셋째, 개선되지 않는다면 서비스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넷째, 심각한 폭력 및 성폭력 등은 형사고소 대상이 됩니다.



교육영상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제4항(장기요양요원의 보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고령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령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영향 예방조치 등) 등



#매월 11일 #상호존중의 날

상호존중의 날

6대 실천 과제

'모든 임직원이 서로 동등하게 존중하고 배려한다(1=1)'는
의미로 매월 11일을 코레일관광개발 '상호존중의 날'로
지정, 운영합니다.

배려하는 문화가 사내에 스며들도록 서로 동등하게
존중하기 함께 실천해요!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를 사용하기

비속어 및 하대하는 표현 대신
서로 존중하는 언어 사용하기



서로의 사생활은 존중해주기

외모지적, 불필요한 성적농담,
개인용무를 묻는 행위 금지



먼저 웃으며 인사하기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등
먼저 웃으며 따뜻한 인사하기



부당한 업무지시 하지 말기

업무시간 외 업무 지시,
사적인 개인 심부름 금지



건전하고 즐거운 회식문화 만들기

의무적 건배사 지시하지 않기,
회식 일정은 사전에 공유하기



서로 칭찬의 말 한마디 주고받기

서로에게 칭찬과 배려의
말 한마디 주고받기

